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5. 27(수) 총 6매(본문 4매)	
담당 부서	규제개혁 법무담당관	담 당 자	• 과장 윤종수, 서기관 한동균, 주무관 신한나, 허동혁 • ☎ (044) 201-3224, 3235, 4817, 4818	
	혁신행정 담당관	담 당 자	• 과장 김정희, 사무관 전철주 • ☎ (044) 201-3213, 3221	
보 도 일 시		2020년 5월 28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28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- 자가용 캠핑화물차 사용신고 면제 등 12개 과제 개선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5.27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 혁신심의회*(1차관 위원장)를 개최하여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규제샌드 박스 신청과제,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국토부 1차관(위원장), 정부위원 4명, 변호사·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

-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경제단체·민관합동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·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규제개선 필요성, 개선방향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다.

- 또한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된 ‘자동차 제작사의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사업’ 임시허가 등에 대해 조건부 수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, 산업부 규제특례심의를 거쳐 최종결정된다.

- 아울러 전문가 확충 등 적극행정지원위원회(규제혁신심의회) 운영 활성화,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, 국민참여를 통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등 「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」도 논의하였다.

-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.

▶ **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**(시행규칙 개정, '20.12)

- (현황) 승용차·승합차를 활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되어 별도의 사용신고가 필요하였다.

* 사용신고 대상 : 특수자동차, 적재물량 2.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

- (개선)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한다.

▶ **도심지 내 VR·AR 확산을 위한 건축물 분류체계 개선**(시행령 개정, '20.12)

- (현황)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·AR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건축물은 위락시설(일반유원시설업)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가 어려웠다.

* 주거지역과 차단된 중심상업지역·일반상업지역 등에 한해 입지 가능

- (개선) 문체부와 협의하여 VR·AR 시뮬레이터 등 유원시설업도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.

▶ **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강화**(자동차관리법 개정, '20.12)

- (현황) 자동차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제도가 없어 검사서비스의 품질저하 또는 부실검사가 우려되었다.

- (개선) 이에 정기검사 기술인력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품질을 갖춘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한다.

▶ **스마트도시의 정보보안 강화규정 마련**(훈령제정, '21.上)

- (현황) 스마트도시에서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및 관련정보가 연계·통합·관리되는 만큼 적정수준의 보안확보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.

- (개선) 이에 영상정보 제공기록·망 분리 등 보안성 가이드라인, 개인 정보 취급 및 반출절차 등에 대한 훈령을 제정한다.

▶ **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규정 완화**(지침마련, '20.12)

- (현황) 다양한 건축소재가 개발되었으나 창고용 가설 건축물의 재질이 건축법령상 '천막 또는 이와 비슷한 것*'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자체마다 유사재질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현장에 혼선이 있었다.
- (개선) 이에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재질에 대한 기준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운영지침을 마련한다.

▶ **일반건설기계대여업 책임분배 근거규정 개선**(시행규칙, '20.12)

- (현황) 일반건설기계업에 소속된 연명사업자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대표자가 공동으로 과도한 책임 등을 진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.
- (개선) 이에 책임분담이 명확히 되도록 책임부과비율을 대표자와 연명사업자간 권리·의무 계약서 작성 시 명시토록 개정한다.

▶ **순환골재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활성화**(시행규칙 개정, '20.9)

- (현황) 불량 순환골재 유통방지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(순환골재 생산업자)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.
- (개선) 이에 인증 시 시료채취 방식개선, 사업장 내 품질관리 인력 겸업허용 등 절차·방식 등을 개선하여 품질인증 활성화를 유도한다.

▶ **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·양수규정 완화**(시행규칙 개정, '20.5)

- (현황) 운수사업자의 일부 양도·양수는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행정구역 내에서만 가능하여 회사규모 축소·변경 시 어려움이 있다.
- (개선) 화물 운송사업자가 적은 세종시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범위를 충청남도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한다.

▶ **공공발주 건축물 설계비 지급기준 개선**(고시개정, '20.12)

- ☐ (현황) 설계자가 내실있는 설계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정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.
- ☐ (개선) 이에 설계대가 요율을 보정하고 건축계획 설계비 추가지급* (설계비 10% 이내) 근거를 마련한다.

* 국가·도시의 상징성 등을 지닌 건축사업에 대해 혁신적 디자인 구현지원

▶ **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확대**(시행령 개정, '20.12)

- ☐ (현황) 최근 경제불황 등으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.
- ☐ (개선)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여 부담금 감면혜택 제도를 확대하도록 개정한다.

▶ **운수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규제완화**(대안제시, '20.12)

- ☐ (현황) 화물운송사업자가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이수자별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부담이 과도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.
- ☐ (개선) 운수종사자 관리강화를 위해 부과규정의 전면개정은 어려우나 업체의 과도한 부담완화를 위한 상한선 제한규정을 마련한다..
- ☐ 운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“국토부는 경제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. 앞으로도 적극행정,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·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한동균 서기관(☎ 044-201-323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

주요과제명(목표시기)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▪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	혁신행정담당관	김정희 과장 전철주 사무관	044-201-3213 3221
▪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(시행규칙 개정, '20.12)	물류산업과	이진철 과장 최은지 사무관	044-201-4016 4017
▪ 도심지내 VR·AR 확산을 위한 건축물 분류체계 개선(시행령개정, '20.12)	건축정책과	김성호 과장 오승열 사무관	044-201-3755 3759
▪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강화 (자동차관리법개정, '20.12)	자동차운행보험과	이중기 과장 노경우 사무관	044-201-3855 3858
▪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규정 완화(지침마련, '20.12)	건축정책과	김성호 과장 오승열 사무관	044-201-3755 3759
▪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책임분배 근거규정 개선(시행규칙 개정'20.12)	건설산업과	최임락 과장 유연형 사무관	044-201-3538 3544
▪ 순환골재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활성화(시행규칙 개정, '20.9)	건설산업과	최임락 과장 백정호 사무관	044-201-3538 3544
▪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 · 양수규정 완화(시행규칙 개정, '20.5)	물류산업과	이진철 과장 최은지 사무관	044-201-4016 4017
▪ 공공발주 건축물 설계비 지급기준 개선(고시개정, '20.12)	건축문화경관과	김태경 과장 조항석 서기관	044-201-3775 3776
▪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확대(시행령 개정, '20.12)	도시교통과	박건수 과장 진영민 주무관	044-201-3797 3807
▪ 운수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규제완화	물류산업과	이진철 과장 남승헌 사무관	044-201-4016 4021

◇ ‘19년에 마련된 적극행정 제도를 기반으로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고 관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심으로 계획 수립

□ 주요 내용

○ (추진현황) 적극행정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분위기
 북업에 집중하여 조직전반에 적극행정 인식확산 성과

* (‘19년 성과)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,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마련,
 소극행정 처리절차 강화, 북업행사(적극행정 슬로건 및 릴레이 등)

○ (추진계획) 기관장 주도의 중점과제 선정·추진을 통해 책임성을 제고하고
 지원체계 내실화로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

기관장 선도 적극행정 문화조성

- 적극행정위원회 확대·강화
-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·추진
- 규제혁신 TF 구성 등 조직문화 개선

적극행정 우대강화 및 보호지원

-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
-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강화 및 소송지원 등

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

- 인허가 분야 중점 지도·점검
- 소극행정 신고센터 활성화

국민체감 성과확산 및 국민소통 강화

- 국민참여·소통창구 강화
- 적극행정 모니터링 운영 등 우수사례 홍보
- 적극행정 인식개선 교육 확대